

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8년 1월 17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 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국제업무 전문요원	임기제 지방행정서기	1명	2년	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통·번역외국인투자자문회의(FIAC) 운영투자유치 타깃 외국기업 발굴 및 네트워킹투자유치설명회 개최·지원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8211호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)
- 서울특별시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

-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등급	자격 요건
일반임기제 행정 8급 (경력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<p>◆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영어 통·번역- 국제비즈니스, 해외 홍보·마케팅, 외국인투자유치, 국제교류 관련분야경력 <p>◆ 우대 조건 : 영어회화 능통자</p>

4. 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8급(상당)	50,220천 원	35,823천 원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 (2018년 보수 기준 공지시 이에 따른 상향분 추가반영 예정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1. 29(월) ~ 1. 31(수), <3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 -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- 접수처 : 서울특별시청 투자유치과(무교로청사 7층)
 - 주 소 : (우편번호 04520)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
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판매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(안)

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 공고	면 접 시 험	최종 합격자 발표
2018. 2. 5.(월)	2018. 2. 7.(수) 무교로청사 7층 공용회의실	2018. 2. 23.(금) 예정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(투자유치과)에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 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, 외국어 구사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(단, 영어 구사능력은 한↔영 통·번역 시험을 면접시험당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함)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(3.5cm×4.5cm)
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,000원(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판매)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-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5호 서식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(원본), 학위증서 사본 1부(단, 원본 지참)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 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
-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6호 서식) 1부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(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, 해당자에 한함)
- 해당외국어(영어)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

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채용담당 : 김현숙(☎ 2133-5323)